[서식 예]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



[별지 제15호서식] (제 1 쪽)

중개대상물 확인·설명서(I)									
① 대상물건의 표 시	토 지	소재지							
		면 적 (m²)			지	목			
	건 물	소재지			건축	년도		_	
		면 적 (m²)	구조		용	도	방 형	:	
② 권리관계에 관한사항	등 기 부 기재사항	소유권에 관한 사항				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			
		토 지			토	지			
		건 물			건	물			
	실 제 권리관계	토 지							
		건 물							
3									
기타 공시되지 아니한									
중요시설 · 물건의									
소유에 관한사항		용도지역 · 구·구역	া		건폐율	%	용 적 율	%	
④ 국토이용·		도시계획시설	1				거래규제 사 항		
및 건축에		도시 개 발사 ^c 국토이용개발 획 수립여부					기타이용 제한사항		

				(제 2 mmm/klac or kright)	한법률구조공단	
⑤ 벽면상태 및 도색 등	벽면상태		(있음, 없음)	MAM.		
	외 벽	□누수(있음 □깨끗함 □ □해당사항]보통임 □도색을 필요로 함			
	내 벽	□깨끗함 □ □해당사항]보통임 □도색을 필요로 함 없음			
	도 배	□깨끗함 □]보통임 □도배를 필요로 함			
		파손여부	□없음 □있음 ()개			
	수 도	수량	□정상적임 □부족함, 부족한 부분 :			
	전 기	□정상 □교체요함, 교체할 부분 :				
	소 방	소화전	□있음 □ 없음 * 소화전이 있는 위치 :			
		기타	□소화기(개)□비상사다리□비상벨			
6		공급방식	□중앙공급식 □개별공급			
내·외부 시설 및	열공급	종류	□도시가스 □기름 □프로판가스 □연탄 □기타			
상태		시설작동	□정상 □수선요함			
	승강기	□있음(양호	_, 불량) □없음			
		주방	□양호 □보통 □불량			
	배 수	욕실	□양호 □보통 □불량			
		베란다	□양호 □보통 □불량			
		지하실	□양호 □보통□불량			
	오ㆍ폐수처리	□양호 □보통 □불량				
	쓰레기처리	□양호 □5	L통 □불량			
	일조량	□풍부함 □보통임 □풍부하지 못함 * 풍부하지 못한 이유 :				
	소 음	□미미함 □]보통임 □심한 편임			
	진 동	□미미함 □]보통임 □심한 편임			
	혐오시설 (반경1km 이내)					
	경 관	□양호함 □]보통임 □불량함			

1 3		7
(저	13	-2

8 교통, 공공시설 및 입지여건	도 로	종 류	()m 접근도로, (()m	기면도로		MWW.
		접 근 성	□용이함 □불편함				
	대중교통	버 스	()정류장	소요시간	:		
		지 하 철	()역 소요	.시간 :			
		기 타					
	주 차 장	□없음 □전용주차					
	교육시설	초등학교	()학교 소요	.시간 :			
		중 학 교	()학교 소요	.시간 :			
H I I'C		고등학교	()학교 소요	.시간 :			
	공공시설	종 류	() 구청·(□기타 :)동사무=	소		
		접 근 성	□용이함 □불편함				
	판매 및	□백화점 및 할인매장(), 소요시간: □종합의료시설(), 소요시간:					
9		□동합의료 □있음 □없		·요시간·			
관리에		□ 위탁관리 □ 자치관리 □기타					
관한 사항	선니무세		□사시선니 □/1다 				
① 조세에	관한 사항						
① 대상물건의 상태에							
관한 자료	. , -		법시행령 제22조의 규	거세 이렇	서 이 즈케r	비사무세	미원선 하이 선
		면을 거래도	당사자 쌍방에게 교부	-합니다.	역 귀 중계대	11.9 둘에	내야역 확인 현
	건 면 ·		년 월 기대 다느 A				
중개업자	성명: 사무소명칭 등록번호: 소재지: 전화번호:	:	서명 또는 인		소 속 공 인 중개사	성명 :	서명 또는 인
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업자가 작성·교부한 중개대상물확인·설명서를 수령합니다. 년 월 일							
권리이전 의 뢰 인	본 인 대 리 인	주소: 주민등록번호/외국인등록번호:					
권리취득 의 뢰 인	본 인 대 리 인		호/외국인등록번호:	서명 또	는 인		
	,, , ,	전화번호:					

기 재 요 령

- 가. ①번은 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·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확인하여 기재합니다.
- 나. ②번의 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기재하고, 실제권리관계는 매도(임대)의뢰인이 고지한 실제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.
- 다. ③번은 기타 공부상 공시되지 아니한 중요시설·물건에 관하여 매도(임대) 의뢰인이 고지한 소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.
- 라. ④번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,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 공부기재사항인 공적인 사항을 기재합니다.
- 마. ⑤ ~ ⑨번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업자가 조사하거나 매도(임대)의뢰인 또는 관리사무소 등에 확인하여 기재하며, 우측 여백란은 특기사항이 있을 경 우 기재합니다.
- 바. ⑩ 번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기재합니다.
- 사. ① 번은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 확인 또는 설명에 필요하여 매도(임대) 의뢰인에게 ⑤ ~ ⑦번 항목중 해당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불응 한 경우 그러한 사실을 매수(임차)의뢰인에게 설명하고, 이 난에 자료요구 및 불응사실을 기재합니다.